

보도일시	2021. 7. 25.(일) 배포 즉시 / 총 5쪽		
관계부처	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	팀 장 김진숙 사무관 안유진	044-202-8890 044-202-8891
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	과 장 손창범 사무관 이윤태	044-215-5210 044-215-5212
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	과 장 한명희 사무관 조충현	044-201-3573 044-201-4592
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	과 장 김경태 사무관 김민정	044-205-3771 044-205-3783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

- ◆ 폭염 시간대 건설현장 작업중지 이행 강력 권고
- ◆ 폭염 취약 사업장 전방위적 지도·점검

□ 정부는 7월 25일(일)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「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○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.

\* 최근 5년간('16~'20년) 여름철(6~8월) 폭염으로 인한 **온열질환 재해자**는 156명(사망 26명) 중 **78%**인 122명(사망 22명)이 **7월 말부터 8월 사이(7.20.~8.30.)**에 집중 발생

□ 특히,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

○ 무더위 시간(14시~17시)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하였다.

□ 각 부처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,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(물, 그늘, 휴식) 및 무더위 시간(14~17시)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·점검한다.

- 특히, 7월 28일(수) 「현장점검의 날」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 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

-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, 조선소, 철강업 등도 지도·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.

- 또한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, 건설협회, 안전·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등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.

○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, 폭염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.

-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

-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한다.

\* 「공사계약 일반조건(계약예규)」 제23조(공사기간 연장시 실비 범위 내 보상), 제26조(태풍·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), 제47조(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공사진행을 일시정지 가능)

○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시키기 위해,

- 지방국토관리청,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 하는 회의를 열어,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,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하고,

- 매주 지방국토관리청·산하 600 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\*할 예정이다.

\* 고속도로(전광표지판), 주요역(전광판), 휴게소(모니터) 등

- 국토부는 관련 고시\*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, 계약금액 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.

\*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제17조(공사기간의 연장), 제23조(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

-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른 조치를 시달하여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.

- 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, 계약기간의 연장,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,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.

- 한편,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(안)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.

□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”라고 하면서,

- “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
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

# 물 그늘 휴식

##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

### ☀️ 폭염특보는?

●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·경보 발령(2020년 시범운영)

**체감온도란?**  
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,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입니다.

**폭염주의보** · 일 최고체감온도가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
·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

**폭염경보** · 일 최고체감온도가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
·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

●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, 열탈진,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

### 💧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.

**물**

▶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 ▶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.

**그늘**

▶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.  
▶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.  
▶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.  
▶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 
▶ 의자나 돛자리,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주세요.  
▶ 소음·낙하물,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

**휴식**

▶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 
▶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,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 
▶ 근무시간을 조정(예 : 9~18시 → 5~14시) 하여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.  
▶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.  
▶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

### 🚨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.

**발생 전**  
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.

·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, 힘없음, 어지러움, 두통, 빠른 심장박동, 구역,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 
·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.

**발생 시**  
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.

·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.  
▶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.  
·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,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.  
·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.  
·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.

##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

● 폭염영향예보 (폭염특보)    **관심**    **주의** (폭염주의보)    **경고** (폭염경보)    **위험**

기온(℃) 습도(%)	27	28	29	30	31	32	33	34	35	36	37	38	39	40	41
50	27.1	28.1	29.1	30.1	31	32	33	34	35	36	37	38	39	40	41
55	27.5	28.5	29.5	30.5	31.5	32.5	33.5	34.5	35.5	36.5	37.5	38.5	39.5	40.5	41.5
60	28	29	30	31	32	33	34	35	36	37	38	39	40	41.1	42.1
65	28.4	29.4	30.4	31.4	32.4	33.4	34.4	35.4	36.5	37.5	38.5	39.5	40.5	41.6	42.6
70	28.8	29.8	30.8	31.8	32.8	33.8	34.9	35.9	36.9	37.9	39	40	41	42.1	43.1
75	29.2	30.2	31.2	32.2	33.2	34.3	35.3	36.3	37.4	38.4	39.4	40.4	41.5	42.5	
80	29.5	30.6	31.6	32.6	33.6	34.7	35.7	36.7	37.8	38.8	39.9	40.9	41.9	43	
85	29.9	30.9	32	33	34	35.1	36.1	37.2	38.2	39.2	40.3	41.3	42.4	43.4	
90	30.3	31.3	32.3	33.4	34.4	35.5	36.5	37.6	38.6	39.6	40.7	41.7	42.8		
95	30.6	31.7	32.7	33.8	34.8	35.9	36.9	37.9	39	40.1	41.1	42.2	43.2		
100	31	32	33.1	34.1	35.2	36.2	37.3	38.3	39.4	40.4	41.5	42.6			

##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을 숙지하십시오.

**관심**  
체감온도 31°C 이상

- ✓ 질병예방(식중독, 장티푸스 등)을 위해 **사업장의 청결관리**에 유의
- ✓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**깨끗한 물** 준비
- ✓ 작업자가 쉬 수 있는 **그늘** 준비   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**민감군 사전 확인**

**주의**  
체감온도 33°C 이상  
또는 폭염주의보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   ✓ 작업자가 쉬 수 있는 그늘 제공
- ✓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**옥외작업 단축** 또는 **작업시간대 조정**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**아이스 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**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**민감군**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


**경고**  
체감온도 35°C 이상  
또는 폭염경보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   ✓ 작업자가 쉬 수 있는 그늘 제공
- ✓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**옥외작업 중지**
- ※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**아이스 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**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**민감군**에 대하여는 **옥외작업 제한**



**위험**  
체감온도 38°C 이상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   ✓ 작업자가 쉬 수 있는 그늘 제공
- ✓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   ✓ **옥외작업 자제**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**옥외작업 중지**
- ※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**아이스 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**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**민감군**에 대하여는 **옥외작업 제한**

**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!!**

-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
-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,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

